

공 고

『건축법』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위반(무허가)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. 6. 29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□ 공고기간 : 2022. 6. 29. - 2022. 7. 13.

□ 공고내용 : 아래 참조

1.공고 제목		위반(무허가)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								
2.대상자	전영*	주민번호	391021-1		주소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2*가길 * (북아현동)				
3.위반 내용	북아현동 220-1* 전영*	위 반 사 항								
		건축주 (소유자)	구 조			용 도	공정율	비 고		
			위치	면적 (㎡)	지붕				벽체 (기둥)	
				1층	4.2㎡	판넬	새시	근생	100%	①
				2층	3㎡	벽돌	새시	근생	100%	②
				3층	3㎡	판넬	새시	주거	100%	③
				4층	6.5㎡	판넬	새시	주거	100%	④
				옥상	3.84㎡	판넬	새시	주거	100%	⑤
		옥상	3.22㎡	판넬	판넬	주거	100%	⑥		
4.공고 내용		위반(무허가)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								
5.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	건축법 제79조 「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」								
6.문의사항		서대문구청 주택과 (☎02-3140-8388)								

※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상기 위반내용에 대해 2022.7.13일까지 자진정비(완전철거 및 원상복구)할 것을 통보하오니 자진정비 후 서대문구청 주택과(☎3140-8388)에서 반드시 정비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